

相對的 衡平理論에 입각한 納稅誠實度の 研究*

변 용 환**

논문접수일 : 94. 11.

게재확정일 : 95. 10.

초 록

租稅衡平性은 납세성실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여러 납세기피속성들중의 하나로써 부분적으로 조세형평성이 연구되 든지 아니면 전반적 개념의 형평성이 사용되어 納稅忌避행위와의 연관관계가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相對的 衡平이라는 보다 세분화된 개념을 도입하여 조세구조의 불형평 성이 납세성실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납세기피기회의 차이로 인한 납 세자의 상대적 입장 및 납세기피행위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어 불형평 상태에 있는 여러 종류의 조세구조가 제시되었다.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조세저항정도는 認知的 저항, 感情的 저항, 납세기피액 등으로 세분화되어 실험적 방법에 의해 파악되었다. 검정결과 불형평상태에 있는 조세구조는 납세자의 상대적 형평감을 저하시켜 조세저항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당면하게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를 회복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납세기피행위를 택하는 성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衡平理論은 납세기피행위의 원인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이 연구는 1993년도 교육부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 육성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翰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經營學科 副教授

I. 序論

1. 研究의 필요성

현대산업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재정적 원천은 세금이다. 따라서 국가의 틀속에서 경제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의 재정적 존립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세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로서 보다는 반갑지 않은 부담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의 세출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재에 대한 편익은 직접적으로 느끼기 힘든 반면 私의 市場에서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국가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춰 조세구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살피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정책과 개인의 입장이 조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기피(tax evasion)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납세기피로 인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납세기피행위가 심하면 국가운영을 위한 재정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租稅衡平의 개념이 조세구조의 틀속에 사전적으로(ex ante) 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기피행위가 심하면 사후적(ex post)으로 조세평형이 파괴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납세기피행위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의하면 1986년 납세기피액수는 1,000억 \$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Taylor 1986) 1973년부터 1981년까지의 납세기피의 증가속도는 평균 14%에 이르고 이 것은 같은 기간동안 GNP평균증가율 1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Witte & Woodbury 1985)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식적인 납세통계자료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 액수는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여러가지 추정결과가 나와 있기는 하다. 국세청의 당국자들은 소득신고의 누락액수 즉 지하경제의 규모가 국민총생산(GNP)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황원오 1984) 최광[1987]은 통화자료에 의해 여러방식으로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였고 이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納稅忌避의 원인으로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지적되어 왔다. 納稅誠實度(tax compliance)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조세구조의 공정성, 세법의 복잡성, 세무조사의 빈도, 세무집행기관의 효율성, 납세기피에 대한 벌칙, 각 개인의 소득원천, 조세윤리 등이 지적되어왔다. 그중에서도 조세구조의 공정성여부는 납세기피를 유발시키는 대표적 요인으로서 주목받아왔다. 그런데 공정성의 개념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명확히 규정되기는 매우 힘들다. Porcano[1985]는 소득분배의 차원에서 공정성의 개념을 실험적연구에 의해 파악해 보았고 국내에서는 변용환[1991]이 조세공정성에 대한 지배적 인식 기준이란 개념을 도입해 보았으나 이 역시 소득재분배효과에 공정성의 개념을 한정시켰다.

납세기피현상과 조세공정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설명해 줄 수도 있는 포괄적인 이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부분적으로나마 이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이론으로서는 1960년대부터 심리학분야에서 시작된 衡平理論(equity theory)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여도와 보상과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그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규율을 파괴 내지는 회피함으로써 心理的 보상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형평이론의 주요내용이다. Spice and Becker[1980]는 납세기피와 조세구조의 불공정성의 상관관계를 희생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나누어 연구하면서 형평이론이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Mason and Calvin[1984]도 행동적 접근방법에 의해 유사한 연구를 했으나 조세공정성의 인식도와 납세기피행위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여 주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납세기피행위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형평이론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개인이 조세구조 및 주변환경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형평감이 납세성실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주된 연구내용이 된다. 본 연구의 주된 공헌은 납세기피행위에 대한 형평이론의 설명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절대적 형평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반해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상대적 형평개념을 사용했다. 또한 인지부조화이론을 응용하여 납세자의 태도를 인지적 대응과 감정적 대응으로 세분한 후 각각의 변수가 납세기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는 것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수목적으로 형평이론을 활용하여 납세기피행위의 사회화현상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바가 없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조세형평성이 납세기피행위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세구조와 주변집단으로부터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형평이론을 적용해 보았다.

우선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질적인 납세집단 사이에 조세구조에 대한 형평감의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각 사안에 대한 형평감의 개념은 납세자의 처한 위치에 따라 상대적일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집단간에 조세형평에 대한 이질감이 지나치게 존재한다면 개인적인 납세기피문제가 집단적 조세저항의 차원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둘째, 소득원천별로 納稅忌避機會가 다르다는데 중점을 두어 조세구조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여부를 파악해 보았다. 셋째, 주변의 관련인물들이 납세행위와 관련하여 취하는 행동들이 개인의 납세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표출된 제반 조세환경에 대한 납세자의 형평감이 구체적인 납세기피행위와 얼마나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아봄으로서 형평이론이 납세기피행위에 대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는 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본 연구는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형평이론 자체가 여러종류의 사회심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납세자의 입장 또한 경제, 사회, 도덕적 입장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의 성격상 조사속성의 수에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행동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II. 理論的 背景 및 假說의 導出

1. 형평이론

형평이론은 인간의 행위를 투입과 산출의 균형여부에서 파악해 보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볼 수 있다. (Adams 1963) 1960년대 이후에 개진되기 시작한 이 이론은 분배문제를 주요 주제

로 하여 발전되었으며 각 개인별로 지출된 비용에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배정의론을 논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된 각 개인들이 자신의 공헌에 비례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의 비율이 모두 비슷하다면 정의(justice)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형평이론의 심리학적 원리는 인지부조화 이론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으로부터 출발한다. (Festinger 1957) 인식의 부조화 현상은 첫번째 인지(cognition)로써 예상되는 두번째 인지의 결과가 원래 예상했던 기대와 상이할 때 발생한다. 만약 한 개인이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높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두 개의 인지는 일관성이 있으며 부조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로 인한 보상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면 인지의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형평이론은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관계를 개인에 국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 인물들의 투입산출관계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개념의 부조화도 다루고 있다. 한 개인이 주변에 비교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는 투입과 산출관계를 자신의 것에 국한시켜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투입에 비해 산출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절대적 의미에서의 인지부조화를 가지게 된다. 투입산출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집단이 주위에 있다면 인지의 부조화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다른 사람의 투입산출관계를 알게 되면 이를 자신의 것과 비교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자신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투입산출관계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처한 입장과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여 나타나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투입산출관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투입산출관계가 다른 비교 대상의 것과 다르면 認知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형평이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평감을 가진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개인적으로 형평상태라고 느끼는 균형이 파괴되면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조화는 긴장(tension)을 느끼게 하고 긴장감으로 인해 당사자는 부조화된 인지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한 부조화는 비교대상의 투입산출관계와 자신의 그 것이 비슷해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衡平(equity)은 개인에 국한된 것만 아니고 비교대상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더 잘 살펴 볼 수가 있다. Austin and Walster(1974)는 상대적인 형평의 개념

을 개인에 고유한 형평(person-specific equity)과 전체와 관련된 형평(equity with the world)의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두가지 개념이 모두 사회적인 비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전체와 관련된 형평은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서 '한 개인의 모든 관계의 총합에 존재하는 형평의 정도'로 정의 되었다. 이 개념은 한 개인이 형평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조화로 인한 긴장감 내지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형평을 찾든지 또는 심리적 형평을 회복하여야 한다. 실질적 형평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반면 심리적 형평을 위해서는 불형평(inequity)상태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다.

형평이론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주로 심리적 회복도가 사용되었다. Austin and Walster (1974)는 認知를 통한 평가(cognitive evaluation)와 感情적 평가(affective evaluation)를 종속변수로 하여 형평이론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한 결과 불형평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혜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2. 납세기피와 조세형평

정부와 납세자와의 관계는 하나의 거래관계로서 설정해 볼 수 있다. (Spicer and Becker 1980) 조세납부는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기 위해 사적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구매를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이때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은 공공재와 소속감같은 정신적인 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형평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납세자 개인에 국한된 투입산출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정부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 봄으로써 조세구조에 대한 만족도를 스스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의 거래관계에서 개인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보다 중요한 요소는 그러한 거래에 참여한 각 국민간의 형평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거래에 참여한 개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래방법과 다른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거래방법에 대해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느낀다면 이는 곧 좌절감 내지는 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불만을 느낀 참가자는 스스로 파괴된 형평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이 생각하는 형평상태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내면적으로 불균형상태를 합리화시키는 소극적인 해소책도

있지만 납세기피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조화로 인한 긴장을 해소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즉 납세기피는 불형평상태에 자신이 처해있다고 믿는 납세자가 취하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납세성실도와 관련하여 형평이론을 적용한 Spicer and Becker[1980]의 연구에서는 조세구조가 불균형상태에 있으면 이로 인한 희생자는 자신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줄임으로서 불균형상태를 회복하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혜자도 납세기피의 액수를 줄임으로서 긴장감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형평과 납세기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인간의 행위에 중점을 둔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는 Spicer and Lundstedt[1976], Song and Yarbrough[1978], Mason and Calvin[1984] 등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조세구조의 불형평상태가 납세자들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 연구는 소득자료를 주고 소득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Milliron[1985]의 연구에서는 조세형평과 납세기피사이에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유사한 Hite[1988]의 연구에서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태영[1992]이 납세회피 관련요인들에 대한 포괄적 실험을 한 결과 형평요인이 납세기피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租稅構造의 不衡平에 대해 납세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나 조세불형평이 납세기피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는 조사대상, 실험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저항감과 실질적인 행동사이를 연결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실험구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기피에 대한 형평이론의 양면, 즉 태도(attitude)와 행위(action)가 유기적으로 관찰되지 못한 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자의 태도를 인지 부조화이론에 입각하여 인지적 대응 및 감정적 대응으로 나누어 세밀히 파악하고 납세기피행위의 상관을 살피보는 방법을 사용했다.

3. 납세환경과 상대적 형평

전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부와 개인간의 기여 및 편익제공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개별적인 불만보다도 납세자 자신이 정부와의 거래에서 가지는 투입산출관계를 다른 납세자들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불만이 당사자의 납세태도를 결정짓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정부와 자신과의 거래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형평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만 주변의 환경과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형평감을 설정하는 일은 생활주변의 단순한 자료를 이용하여 쉽게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들로서는 準據集團(reference group)¹⁾의 납세기피기회(tax evasion opportunity)와 납세성실도를 들 수 있다.

가. 준거집단의 납세기피기회

어떤 이유에서든 조세구조가 자신이 생각하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납세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조세구조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직접 납세기피행위로 연결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Mason and Calvin[1984]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세구조의 형평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이 납세성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된 이유는 납세기피사실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때문이었다. 이 것은 발각될 가능성이 적은 납세기피기회가 주어진다면 납세기피행위가 발생하기 쉽다는 논리가 될수도 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법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복잡해진 세법은 절세를 위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납세기피를 했을 경우 추적당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Milliron[1985]의 연구에서는 조세복잡성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봉급생활자와 신고납부를 하는 자영업자사이에는 절세, 또는 납세기피의 기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봉급생활자는 자영업자

1) 준거집단은 직장동료, 친구, 친척 등 납세자 자신이 세금과 관련하여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총칭한다.

에 비해 납세기피의 기회가 적음으로 해서 세금거래에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느낄 수도 있다. Vogel[1974]의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자가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탈세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실질적으로 탈세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납세기피행위는 결국 사전적(ex ante)으로 내정된 각자의 조세분담관계를 사후적으로(ex post) 왜곡시키기 때문에 납세기피기회가 다른 준거집단을 가진 납세자는 상대적 불형평성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나. 준거집단의 납세성실도

주변 사람들의 納稅誠實度는 납세자 자신이 처한 상대적 형평을 판단하게 하는데 가장 쉬운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형평이론에 준하여 납세자들이 반응한다면, 주변에 납세기피행위가 빈번할 경우 당사자는 본인의 도덕철학적기준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기피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주변사람들이 납세기피를 많이한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납세기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납세성실도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한 준거집단의 하나로서는 직업을 들 수 있다. 소득표준을 사용하여 과세가 되는 집단에서는 매출액을 낮추어 납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관습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이러한 관습적인 납세기피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Song and Yarbrough[1978]의 연구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탈세를 많이 한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낮은 조세윤리(tax ethic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icer and Lundstedt(1976)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행동규범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납세기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납세자의 납세성실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의 도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형평이론이 납세기피행위에 대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형평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조세환경을

설정해 놓고 이에 납세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면 형평이론의 설명력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준거집단의 납세기피기회와 납세성실도를 소재로 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이 주어 졌을 때 납세자의 태도(attitude) 및 행위(action)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우선 납세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형평이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혜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수혜자란 조세구조의 불형평으로 인해 정당한 몫 이상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를 의미하며 피해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당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대부분의 조세연구에서는 피해자가 수혜자보다 훨씬 많은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1 : 조세불형평성에 대한 태도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

만약 연구 결과 피해자가 수혜자에 비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가설이 기각되면 형평이론이 납세자의 태도결정에 있어 설명력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조세환경에서 오는 형평성에 대해 납세자의 태도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가설을 통해 알아 본다. 이 가설들이 기각되면 형평이론이 설명력이 있는 것이 된다.

H2 : 납세자의 태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기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H3 : 납세자의 태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납세기피에 대한 형평이론의 설명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형평한 상태의 조세환경속에서 납세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납세기피행위를 실천에 옮기는지 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세가지 가설은 위의 세가지 가설과 설정근거와 해석방법에서는 동일하나 조세불형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방법이 추상적인 납세자의 태도가 아니고 구체적 결과인 납세기피행위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H4 : 조세불형평성으로 인한 납세기피행위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

H5 : 납세기피행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기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H6 : 납세기피행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세형평성에 대한 태도가 실질적인 납세기피행위로 연결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일곱번째 가설은 이러한 연결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기각되면 형평이론이 납세기피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H7 : 납세기피행위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와 유의적인 관련이 없다.

한편 준거집단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 인해 납세기피를 하는 것은 형평이론뿐만 아니라 사회적 접촉으로 인해 특정집단의 납세기피행위가 관습화되는 사회화 현상으로서도 설명되어 질 수가 있다. Vogel[1974]의 연구에는 납세기피를 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정도가 납세성실도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관습이 상이한 두집단을 동일한 구도하에서 실험하면 사회화현상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가 간편하다. 이를테면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봉급생활자와 자진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 두집단의 결과가 달라서 납세기피행위에 社會化현상이 있는 결과가 나오면 형평이론의 설득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복효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형평이론과 사회화현상의 관찰이 완전히 독립된 구도하에서 실시되었다. 즉 형평이론을 사용하여 납세기피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화요인은 완전히 배제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가설들은 납세기피관습에 사회화현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만 알아보기 위한 것이 된다. 다음의 가설들이 기각되면 사회화현상이 없는 것이 된다.

H8 : 조세환경의 불형평성에 대해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는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다.

H9 : 조세환경의 불형평성에 대해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는 납세기피행위에 있어 그 강도를 달리한다.

Ⅲ. 研究方法

1. 실험변수

가. 독립변수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독립변수로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회로 비교될 수 있는 납세자 자신의 상대적 입장 및 준거집단의 납세기피행위가 사용되었다. 납세자 자신의 상대적입장에는 수혜자, 피해자 및 중립의 3개의 수준이 주어졌다. 준거집단의 납세가 없

을 경우에는 수혜자가 되고 준거집단의 납세기피기회가 있으면 피해자 준거집단의 납세기피 기회와 동일한 입장이면 중립이 된다. 준거집단의 납세기피행위에는 기피 및 납부로 2개의 수준이 부여되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6개의 각본이 만들어 졌으며 <표 1>에 있는 것과 같이 각 각본마다 2개의 독립변수가 사용되었다.

<표 1> 각 실험별 독립변수의 적용방법

실험순서	본인입장	준거집단의 납세기피 기회	준거집단의 납세기피 행위	실험순서	본인입장	준거집단의 납세기피 기회	준거집단의 납세기피 행위
1	수혜자	적음	납세기피	4	수혜자	적음	납부
2	피해자	많음	납세기피	5	피해자	많음	납부
3	중립	본인과 동일	납시기피	6	중립	본인과 동일	납부

응답자에게 부여되는 납세자 자신의 상대적 입장이란 불형평상태의 조세환경속에서 응답자가 가상적으로 처하게 되는 위치를 말한다. 만약 불형평상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입장이 되면 수혜자가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된다. 이 변수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불형평한 조세환경속에서 취하는 태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양자의 취하는 태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 납세자가 형평이론에 입각한 행위를 취한 것이 된다. 납세자 자신의 상대적 입장은 준거집단의 납세기피기회가 본인과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변수는 조세환경속에서 사전적(ex ante)으로 주어진 조건으로써 선택적으로 분포된 납세기피 기회로 인해 불형평상태에 있는 조세구조에 대해 납세자가 어떠한 심리적 반응과 행동을 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납세기피행위는 비교대상이 납세기피를 할 때 납세자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이다. 납세기피행위는 事後的(ex post)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즉 사전적으로 세법으로 구체화된 조세구조가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납세자들이 납세기피자와 성실한 조세납부자로 대별된다면 전반적인 조세환경자체는 불형평상태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수는 비교대상이 납세기피를 함으로 해서 납세자 자신이 어떠한 심리적 상태에 놓이며 조세납부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취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나. 종속변수

조세환경이 불형평상태에 있을 때 납세자가 보이는 반응이 종속변수가 되며 납세자의 태도(attitude) 및 구체적인 行動(action) 두가지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납세자의 態度는 납세자가 처해있는 조세환경에 대해 자신이 내면적으로 가지는 인지적 평가(cognitive evaluation)와 감정적 평가(affective evaluation)를 모두 포함한다. 인지적 평가는 조세환경에 대한 형평성여부를 자신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준거대상과 비교한 자신의 조세부담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감정적 평가는 주어진 불형평 상태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말한다. 피해자 입장일 경우 화가 날 수 있으며 수혜자일 경우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인지적평가와 감정적평가는 서로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납세자가 조세구조가 불형평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 긴장감을 느낀다면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는 상호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태도변수는 실험에서 응답자가 주어진 각본을 숙지한 후 행해지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측정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은 계수화되어 필요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Spicer and Lundstedt[1976]는 조세공정성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을 계수화시킨 租稅抵抗尺度(tax resistance scale)를 사용하여 심리적상태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납세자의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ustin and Walster[1974]가 도입한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설문에는 두 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질문이 각각 두개씩 주어졌다. 각 질문마다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5개의 선택안이 주어지며 최종적으로 이 선택안들을 1부터 5까지 계수화시키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1이 주어지며 그 반대인 경우에는 5가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계수를 조세저항척도로 사용하며 높은 숫자가 나온 결과일수록 납세자가 저항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²⁾ 또한 조세저항계수는 인

2) 조세반응결과 해석에 있어서는 수혜자와 피해자의 경우가 서로 달라야 한다. 피해자일 경우 조세불형평을 심하게 느끼면 이는 납세기피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혜자일 경우 그러한 조세불형평을 느끼면 납세기피행위를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살려서 납세자의 태도와 납세기피간의 상관관계를 살필 때에 한하여 피해자의 경우는 그대로 두고 수혜자의 경우 인지적 평가와 관련된 결과는 실험에서 나온 숫자를 역방향으로 바꾸어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의 태도와 소득신고액간의 상관관계

지적 저항계수와 감정적 저항계수로 나누어 분석되도록 하였다.

납세자의 행동은 불형평상태에 처해있는 납세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형평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취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종속변수이다. 이 변수는 형평이론이 납세기피행위에 대해 얼마나 직접적인 설명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응답자가 불형평상태로 구성되어있는 각본을 숙지한 후에 소득신고를 얼마나 누락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변수는 측정된다. 구체적인 납세기피액수가 이 변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측정치이지만 응답자가 계산을 많이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유사한 연구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소득신고액수를 측정치로 사용했다.

조세환경에 대한 심리적인 불만이 납세기피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다. Hite[1986]가 납세기피행위와 심리적반응을 동시에 알아보는 실험설계를 하였지만 두 속성의 연결관계는 파악하지 못했다. 두가지 종속변수를 본 연구에서 채택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납세기피에 관련된 태도와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2. 실험과업 및 가설검정방법

실험집단은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로 나누어져 있으며 양 집단간에 실험내용은 동일하다. 실험대상에게는 <표 1>의 내용을 담고 있는 6개의 각본이 제공되며 각 각본에는 불형평상태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조세환경이 제공된다. 각 脚本이 끝날 때마다 주어진 조세환경에 대해 응답자의 심리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 있다. 그리고 소득신고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수치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질문에 수치로 나타난 응답자의 반응은 그대로 종속변수의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

각 가설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검정할 수 있다. 본 연구

를 분석할 경우에 한하여 각본 1과 4에서 질문 1과 2의 경우에 나온 결과는 모두 역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여타 결과 분석시에는 원래의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감정적 평가를 위해 주어진 두개의 질문은 응답의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의 내용을 사용했다. 질문 3은 정방향이나 질문 4는 역방향이다. 따라서 모든 각본의 질문 4의 응답은 역방향으로 계수화되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의 주된 목표인 납세기피에 대한 형평이론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들(H1-H7)은 집단 내 분석에 의해 검정되고 부차적 목표인 납세기피의 사회화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가설들은 집단간 분석에 의해 검정된다. 각 가설들의 검정방법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가설검정방법

가설	내 용	검정방법
H1	조세불형평성에 대한 태도는 수혜자와 피해자 기 서로 다르지 않다.	각본 1과 2, 각본 4와 5에서 나온 태도변수의 평균값을 각각 비교하여 유의적차이가 있으면 기각
H2	납세자의 태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 기회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본 2와 3, 각본 5와 6의 태도변수 평균값을 각각 비교
H3	납세자의 태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행위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본 1과 4, 2와 5, 3과 6의 태도변수 평균값 을 각각 비교
H4	조세불형평성을 인한 납세기피행위는 수혜자 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	각본 1과 2, 각본 4와 5의 행동변수 평균값을 각각 비교
H5	납세기피행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 기회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본 2와 3, 5와 6의 행동변수 평균값을 각각 비교
H6	납세기피행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 행위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본 1과 4, 2와 5, 3과 6의 행동변수 평균값 을 각각 비교
H7	납세기피행위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납세자와 태도와 유의적인 관련이 없다.	태도변수와 행동변수 측정치의 상관관계를 분 석
H8	조세환경의 불형평성을 대해 자영업자와 봉급 생활자는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다.	집단간 태도변수의 평균값을 각본별로 표본집 단간 비교
H9	조세환경의 불형평성에 대해 자영업자와 봉급 생활자는 납세기피행위에 있어 그 강도를 달 리한다.	집단간 행동변수의 평균값을 각본별로 표본집 단간 비교

IV. 結果의 分析

1. 실험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디자인이 사용되었다. 실험대상이 주어진 세 무관련과업을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납세경험이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의 보편성을 높이고 사회화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납세 관습을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두개 이상의 집단이 조사대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집단이 많이 동원될수록 연구결과의 보편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 및 비용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자체가 실험적디자인하에서 납세기피에 대한 형평이론의 설명력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므로 보편성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전제하에서 실험 집단을 일반적인 대상 두개로 한정시켰다.

납세경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가 실험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 두 집단은 납세기피기회나 행위가 서로 대조적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구결과에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봉급생활자는 연구자 본인과 직접 면식이 있는 회사에 부탁을 하였다. H증권회사, H대학, S병원, H은행, D광업, S상사의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으며 총 60부를 부탁하여 53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분석 가능한 것은 46부였다. 자영업자는 단체로 부탁하기가 힘든 관계로 연구보조원을 사용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동일한 응답자가 6가지의 상이한 각본에 대해 현장감있게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바꾸면서 응답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의미있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응답자 자신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면담자세가 요구되었다. 실험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의사를 묻고 자연스럽게 수락할 경우에 한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설문에 임하게 하였다. 조사원이 면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각본의 내용을 요약하여 구술한 후 응답하게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었다. 방문처는 식당, 술집 등 요식업소가 많았고 의류판매업, 약국, 부동산업소, 슈퍼, 노래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총 52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분석가능한 것은 총 41부이었다. 모든 설문대상자에게는 성실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약간의 선물을 하였다.

설문대상의 인구통계적 배경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전체 87명가운데 75명이고 평균 나이는 38세이고 모든 사람이 납세경험이 있고 그 평균은 11년이었다. 연간소득의 평균은 2,644만원이었다.

<表 3> 說問對象의 人口統計的 背景

학별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 체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재이상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재이상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재이상
	0	13	33	9	20	12	9	33	45
연간 소득	평균 표준편차	1,924만원 1,060만원		평균 표준편차	3,451만원 1,762만원		평균 표준편차	2,644만원 1,619만원	
나이	평균 표준편차	36세 8세		평균 표준편차	41세 7세		평균 표준편차	38세 8세	
납세 경험	평균 표준편차	10년 9년		평균 표준편차	12년 6년		평균 표준편차	11년 8년	
총계	46명			41명			87명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집단이 그 집단의 구성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연구결과의 해석에 어느 정도의 普遍性을 더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표 5>에는 두 집단간 주요 배경요인들에 대한 차이분석이 요약되어 있다. 교육은 봉급생활자집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 및 소득은 자영업자 집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납세경험은 두집단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나이, 납세경험, 소득 네가지 배경요인을 함께 차이분석을 한 결과 Wilks' Lambda가 0.3822로 총체적인 측면에서 두 집단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통계적배경의 집단간 비교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유도 : 모형	오차	F값	P, > F
직종	교육	2	84	14.6	0.0001
직종	나이	2	84	9.3	0.0002
직종	납세경험	2	84	2.2	0.1136
직종	소득	2	84	13.3	0.0001
직종	교육, 나이 납세경 험, 소득	Wilks's Lamda 0.3822			

2. 납세기피에 대한 준거집단의 영향력 분석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대적인 형평감을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준거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표 5〉에는 납세자 자신이 처해있는 租稅環境, 즉 상대적 형평감을 달리 느낄 수 있는 6가지의 각본이 있고 각본별로 조세환경에서의 준거대상과의 상대적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 납세자의 반응이 계량화되어 분산분석을 한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조세저항계수는 인지적 저항과 감정적 저항을 알아보기 위한 모든 질문결과의 평균값으로써 평균값으로써 주어진 조세환경에 대한 납세자의 전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인지적 저항이란 납세자의 처해있는 환경에 대해 논리적 공정성의 차원에서 문의한 질문에 대한 반응이고 수치로 나타난 질문결과 두개의 평균값이 인지적 저항계수이다. 감정적 저항은 주어진 조세환경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질문 결과 두개의 평균값이 감정적 저항계수이다. 이 두계수에 대한 분석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납세신고액은 주어진 환경에서 응답자가 의사결정한 납세신고액들의 평균값으로써 납세자의 행위로 나타나는 행동변수를 의미한다.

〈표 5〉 태도변수 및 행동변수의 분석

조세저항계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체		
각본	평균	유의성분석	평균	유의성분석	평균	표준편차	유의성분석
1	2.82	B*	2.86	B	2.83	.59	B
2	4.42	A	4.37	A	4.40	.45	A
3	2.33	C	2.31	C	2.32	.39	B
4	2.74	B	2.72	B	2.72	.54	B
5	4.23	A	4.27	A	4.25	.61	A
6	2.16	C	2.56	C	2.20	.59	B

납세신고액 (단위 : 만원)							
1	305	B	240	B C	275	363	A B
2	66	C	41	D	55	202	B
3	83	C	95	D	89	226	B
4	471	A	495	A	482	407	A
5	117	C	115	C D	116	253	A B
6	330	B	336	B	333	388	A B

* 서로 다른 문자를 가지고 있는 각본들의 경우는 그 평균값 $\alpha < 0.05$ 수준에서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2.1 납세자의 태도에 대한 준거집단의 영향력

가설 1, 가설 2 및 가설 3을 통해 준거집단으로부터 오는 상대적 조세형평감이 납세자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납세자의 태도는 조세저항계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인지적저항계수와 감정적저항계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조세저항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와 모두 동일하였다.

〈가설 1〉의 검정

각본 1과 각본 2는 준거대상이 모두 납세기피를 하는 경우이다. 각본 1에서는 준거대상이 납세기피기회가 없는 반면 응답자 자신은 납세기피기회가 많은 수혜자의 입장이 된다. 각본

2에서는 준거대상이 납세기피기회가 많고 응답자 자신은 납세기피기회가 없다. 조사대상전체의 조세저항계수 평균값은 각본 1에서는 2.83, 각본 2에서는 4.40으로 유의적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화한 인지적 저항계수 및 감정적 저항계수도 두 각본사이에 모두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본 4와 5는 준거대상이 모두 조세납부를 하나 응답자의 입장은 수혜자와 피해자로 대별되는 입장이다. 조사대상전체의 조세저항계수 평균값은 각본 4에서 2.72, 각본 5에서는 4.25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혜자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조세저항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세불형평성에 대한 태도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가설 1>은 기각된다.

<가설 2>의 검정

각본 2와 각본 3에서는 준거대상이 모두 납세기피를 하며 응답자 자신은 납세기피기회가 없는 봉급생활로 설정되었다. 단 준거대상이 각본 2에서는 납세기피기회가 많은 자영업자인 반면 각본 3에서는 납세기피기회가 없는 봉급생활자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각본 2에서는 응답자는 준거대상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되나 각본 3에서는 준거대상과 수평적 입장에 서게 된다. 납세저항계수 전체 평균값은 각본 2에서 4.40, 각본 3에서는 2.32로 나타나서 납세기피기회가 많은 준거대상에 대해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피해현상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본 5와 6에서 준거대상이 모두 조세납부를 하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른 상황들은 각본 2와 3를 비교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조세저항계수의 전체 평균이 각본 5에서는 4.25, 각본 6에서는 2.20으로 나타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거대상이 납세기피기회가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저항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자의 태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기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설 2>는 기각된다.

<가설 3>의 검정

각본 1과 4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납세기피기회는 동일하다. 각본 1에서는 준거대상이 납세기피를 하는 반면 각본 4에서는 납세기피를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조세저항계수의 전체 평균이 각본 1에서는 2.83, 각본 4에서는 2.72로 나타났고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가 준거대상과 납세기피기회에서 동일한 입장에 서게되면 원천적으로 조세구조에

대한 상대적 불만이 있기가 힘들고 납세기피행위자체는 언제든지 본인 자신의 선택문제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응답자와 준거대상이 납세기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동일한 위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대적 형평감이 작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입장이 바뀌면서 준거대상과는 계속 납세기피기회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각본 2와 각본 5, 각본 3과 각본 6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의 태도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설 3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2.2 납세기피행위에 대한 준거집단의 영향력

가설 4, 가설 5 및 가설 6을 통해 준거대상에 대한 상대적 형평감이 납세기피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가설 4는 가설 1과 가설 5는 가설 2와 가설 6은 가설 3과 응답자가 처한 위치, 준거대상의 납세기피기회 및 납세기피행위 등에서 동일한 각본을 사용하여 검정하였으며 단 검정내용이 조세저항계수로 반영되는 태도가 아니고 납세신고액으로 나타나는 납세성실도로 바뀐 점만 다르다.

<가설 4>의 검정

수혜자의 입장인 각본 1에서는 납세신고액 전체 평균이 275만원이고 피해자의 입장인 각본 2에서는 55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편차의 과대 및 결과들이 좌편향(left-hand skewed)된 이유로 해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결과를 세분하여 봉급생활자집단과 자영업자로 나누어 분산분석을 해 보면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평균에서의 비유의적인 차이는 두 집단의 분포형태가 달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소 집단내 분석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각본 4와 5를 비교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동일한 상황에서 수혜자와 피해자의 납세신고액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세불형평성으로 인한 납세기피행위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가설 4는 기각되다.

〈가설 5〉의 검정

준거대상이 납세기피기회를 가지고 있는 각본 2에서는 납세신고액 전체 평균이 55만원이고 준거집단이 납세기피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각본 3에서는 89만원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본 2와 각본 3은 준거집단이 납세기피를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준거대상이 납세기피를 하지 않는 각본 5와 각본 6을 비교하면 납세신고액 전체 평균은 유의적 차이가 없으나 집단별 비교에서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집단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이 납세기피를 하는 경우와 납세기피를 하지않는 경우에 일관성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가설 5〉의 성립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은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준거대상이 납세기피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이 준거집단의 납세기피기회여부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성실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가설 6의 검정〉

각본 1, 2, 3에서는 준거대상이 납세기피행위를 하며 각본 4, 5, 6에서는 준거대상이 납세기피행위를 하지 않는다. 납세기피기회를 제외한 다른 변수는 각본 1과 4, 2와 5, 3과 6이 서로 동일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각본들을 상호 비교하면 된다. 응답자가 수혜자 입장에 있는 각본 1과 각본 4의 납세신고액 전체평균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집단별 분석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가 피해자 입장에 있는 각본 2와 5에서의 납세신고액 평균은 전체뿐만 아니라 집단별 분석에서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중립 입장에 있는 각본 3과 6에서는 집단별 분석에서 봉급자와 자영업자집단 모두 납세신고액 평형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입장이 변화함에 따라 납세신고액 평균값의 유의적인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를 않았으므로 〈가설 6〉의 성립여부를 판별하기가 힘들다. 부분적으로는 응답자가 수혜자 또는 중립의 위치에 있을 때는 준거집단의 납세기피행위로부터 응답자의 납세성실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태도와 납세기피행위간의 연관성 분석

조세형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가 납세기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조세저항계수와 납세신고액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해 보았다. <표 6>에는 각 태도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납세신고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선 분석이 요약되어 있다. 인지적 저항계수와 납세신고액과의 관계에서는 회귀계수의 t값이 -4.8이 나와 상대적 형평성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납세기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저항계수와 납세신고액과의 관계에서는 회귀계수의 값이 -8.6로써 인지적 저항계수의 경우보다도 납세기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저항 및 감정적 저항을 합친 개념인 납세자의 태도에서는 회귀계수의 값이 -7.2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납세기피행위는 납세자의 태도와 유의적인 관련이 없다는 <가설 7>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인지적 저항계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정적 저항계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선 분석에서는 회귀계수의 t값이 20.1로 나타나 조세불형평성에 대한 인지적 상태가 감정적 저항으로 연결됨을 파악할 수 있다.

4. 납세기피의 사회화 현상 분석

납세기피의 직업별 사회화 현상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각본별로 사업자집단과 봉급생활자집단을 대비시켜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한 각본당 인지적 저항계수, 감정적 저항계수, 조세저항계수, 납세신고액 등 총 4개의 변수별로 각각 t 검정을 했으며 6개 각본의 경우를 모두 실시하였으므로 총 24개의 검정 결과가 나타났다. 그중 21개의 경우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각본 6에서 인지적 저항계수가 사업자 2.37, 봉급생활자 2.29, 그리고 조세저항계수가 사업자 2.26 봉급생활자가 2.16으로 $\alpha < .1$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본 2에서 납세신고액이 사업자 평균이 41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66만원으로 $\alpha < .1$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상 세가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납세태도 및 납세기피행위가 봉급생활자 집단과 사업자집단과의 비교에서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기피행위 또는 태도가 직업과 관련된 사회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가설 8과 가설 9는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태도변수 및 행동변수간의 연관성에 대한 회귀선 분석

<u>인지적 저항이 납세기피에 미치는 영향</u>				
종속변수 : 납세신고액				
독립변수 : 인지적 저항계수				
	상관관계	절편(t)	회귀계수(t)	F
봉급생활자	-.22	432.7(7.3)	-66.5(-3.7)	14
자영업자	-.19	381.8(6.7)	-53.0(-3.1)	9
전체	-.21	408.4(9.9)	-60.1(-4.8)	23
<u>감정적 저항이 납세기피에 미치는 영향</u>				
종속변수 : 납세신고액				
독립변수 : 감정적 저항계수				
봉급생활자	-.32	579.9(8.8)	-112.3(-5.6)	31
자영업자	-.39	600.6(9.9)	-122.2(-6.6)	44
전체	-.35	590.0(13.1)	-117.1(-8.6)	73
<u>납세자의 태도가 납세기피에 미치는 영향</u>				
종속변수 : 납세신고액				
독립변수 : 조세저항계수				
봉급생활자	-.29	557.0(8.2)	-106.0(-5.1)	26
자영업자	-.31	524.4(8.3)	-98.8(-5.1)	26
전체	-.30	541.1(11.6)	-102.4(-7.2)	52
<u>인지적 저항이 감정적 저항에 미치는 영향</u>				
종속변수 : 감정적 저항계수				
독립변수 : 인지적 저항계수				
봉급생활자	.63	1.44(10.8)	.55(13.5)	183
자영업자	.69	1.23(9.4)	.61(15.0)	224
전체	.66	1.35(14.3)	.58(20.1)	404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이론의 납세성실도에 대한 설명력을 파악해 보았다. 형평이론의 적용시에는 상대적 형평을 사용하였다. 상대적형평에 의해 연결되기 쉬운 개념인 납세성실도의 사회화현상도 추가로 조사되었다.

납세성실도는 납세자의 태도와 행위로 나누어 파악되었다. 납세자의 태도는 상대적 불형평성에 대한 인지적 저항감과 심리적 저항감을 조사함으로써 파악하였고 납세자의 행위는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납세신고액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는 형평이론이 납세성실도 내지는 납세기피의 원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相對的 不衡平性을 인지하도록 되어있는 조세구조하에서는 피해자가 수혜자보다 조세저항감이 높았고 납세기피액수도 부분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수혜자가 도덕적 스트레스를 느껴 이의 해소를 위해 납세기피액을 줄인다는 논지까지 증명해 줄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감지하고 이러한 상대적 피해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기피를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투입산출비율을 준거대상과 비교해 보고 불형평성을 느낄 때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불형평성을 해소하려 한다는 형평이론이 피해자의 납세기피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준거집단이 납세기피기회가 많은 경우에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조세저항감 뿐만 아니라 납세기피행위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납세기피기회가 많은 직업인을 준거대상으로 하게 될 때 준거대상의 탈세여부에 관계없이 구조화된 納稅忌避機會의 불공평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납세기피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급생활자가 원천적으로 납세기피 내지는 절세의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더 느끼는 현상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납세기피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발전하여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준거집단이 納稅忌避行爲를 할 때에 납세자의 태도 자체는 유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납세기피기회에 영향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아마 구조화된 불형평성을 나타내는 납세기피에는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개별화된 납세기피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납세자의 납세기피행위 자체는 준거대상의 납세기피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조세구조에 대한 만족도는 납세성실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이론에서 논하는 태도와 행위의 유기적인 관계는 납세기피현상에서 의미있게 적용되는 결과를 보였다. 납세자의 態度 및 납세성실도에 있어 직업에 따른 사회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집단내의 상대적 형평감이 집단구성원의 사회화현상을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기피와 관련된 사회화현상이 있으면 이 또한 납세기피행위에 대한 형평이론의 설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현상이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형평상태에 있는 조세구조는 납세자들이 납세기피행위를 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써 그간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준거대상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이라는 보다 세분화된 개념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형평이론이 납세기피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인위적 실험설계로 인해 보편성을 가지기 힘든 문제가 있다. 표본 수 및 조사집단의 수가 제한 되어있고 조사대상 인적사항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또한 현장성이 부족한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설문에 대해 인위적 의사결정을 요구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이 약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향후의 연구는 이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더 자연스런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실험구조를 만들어 연구 결과의 내외적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의 차이 등 수직적 형평성에 따른 상대적 비교도 본 연구결과를 이용한 연구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변용환, “조세공정성에 대한 지배적 인식기준”, 경영학연구, 1991, 6.
2. 전태영, “조세회피 관련요소에 대한 행동적 연구” 경영학연구 21, 1992, 5.
3. 최광,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42, 1987, 5.
4. 황원오, “지하경제, “한국세정신보, 1984, 6, 14.
5. Adams, J. S.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1963, pp. 422-436.
6. Austin, W. and E. Walster, "Participants' Reactions to Equity with the Worl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1974), pp. 528-548.
7. Festinger, L. A.,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Row Peterson, 1957. Hite, P. 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wo Possible Explanations for Taxpayer Noncompliance: Tax Shelters and Noncompliant Peer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1986.
8. Mason, R. and L. D. Calvin,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 *National Tax Journal*, Vol. 37(1984) pp. 489-496.
9. Milliron, V. C.,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3, No. 2, (Autumn, 1985), pp. 794-816.
10. Porcano, T. M., "Distributive Justice and Tax Policy"; *The Accounting Review*, Vol. LIX. No. 4 (October, 1985). pp. 619-635.
11. Song, Y. and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8(1978), pp. 442-457.
12. Spicer, M. W. and L. A.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 *National Tax Journal*, June 1980, pp. 171-175.
13. Spicer, M. W. and S. B. Lundstedt, "Understanding Tax Evasion, " *Public* Vol. 31, 1976, pp. 295-306

14. Taylor, A. III, "Testing Time for the Tax Collectors," *Fortune*, April 14, 1986, pp. 82-84, 87.
15.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27(1974), pp. 499-513.
16. Witte, A. and D.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The Case of the U. 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March, 1985), pp. 1-13.

〈부 록〉

실험각본의 예로서 두번째 각본

◆ 두번째 설문

주의 : 당신이란 용어를 항상 자기자신이라 생각하고 아래의 내용이 당신이 당면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에 응해주십시오 !

당신은 봉급생활을 하고있으며 세금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신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막역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해마다 벌어들인 소득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 친구는 당신에 비해 4배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한편 세금은 당신과 비슷한 금액을 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영업에는 합법적인 절세방법, 또는 관행화된 탈세방법(예 : 매출액 누락 등)을 사용할 기회가 많으며 그 친구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이런 관행을 적절히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당신은 올해 본래의 봉급생활이외에 부업을 하여 1,000만원의 소득을 과외로 올렸습니다. 물론 이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이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부수입은 세무서에서 추적하기 힘들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당신의 친구도 당신의 경우와 비슷한 성격의 부수입을 1,000만원 가량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부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납세기피를 하기로 작심한 것입니다. 당신은 1,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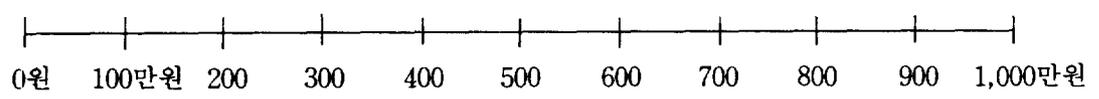
〈질문 1〉

친구와 관련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금과 관련된 제반 상황에 대해 당신의 개인적인 느낌은 어떠합니까? 주어진 선택의 ()안에 ○표를 하는 방식으로 아래의 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1. 내 친구의 것과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가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다.
전적으로 동의() 동의한다() 모르겠다() 반대한다() 전적으로 반대()
2. 나는 내 친구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조세구조에 어쨌든 만족한다.
전적으로 동의() 동의한다() 모르겠다() 반대한다() 전적으로 반대()
3. 나는 내 친구와 동일한 액수의 세금부담을 가지는 것에 대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전적으로 동의() 동의한다() 모르겠다() 반대한다() 전적으로 반대()
4. 나는 내 친구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현실에 대해 화가 난다.
전적으로 동의() 동의한다() 모르겠다() 반대한다() 전적으로 반대()

〈질문 2〉

이상의 주어진 현실하에서 당신은 과외소득 1,000만원을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겠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하지않겠습니까? 또는 일부만 신고하겠습니까? 어떤 액수로 신고해도 나중 세무당국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소득신고할 금액을 0원부터 1,000만원의 금액을 표시한 아래의 선위에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A Study of Taxpayer Compliance Based on the Theory of Relative Equity

Yong Hwan Byun*

ABSTRACT

Tax equity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axpayer compliance. The concept of the relative equity is us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itable tax situation and tax evasion behavior. While the general equity has been used pervasively in existing studies, a relative position and a tax evasion behavior of the reference party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inequitable tax environment. The tax resistance level, as a dependent variable, was subdivided into cognitive resistance, affective resistance and amount of tax evasion for the detailed experimental analysis.

Significant difference of tax resistance level among several inequitable tax situations was observed. Taxpayer chose tax evasion in order to reduce the stress from the inequitable situation and to recover the balanced feeling of the tax equity. It was shown that Equity theory has the explaining power for the behavior of taxpayer noncomplianc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Hallym University

